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11월 1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328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 단서”를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또는”을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0호의 업무 및 그에 각각 부대되는 업무만을 취급하는 출장소(이하 “여신전문출장소”라 한다)를 영업구역 내에 3개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하까지 설치하려는 상호저축은행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저축은행을”을 “상호저축은행(이하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또는 계약이전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최대주주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제3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가 되려는 자”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제3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상호저축은행은”을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업구역”을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다

목 중 “여신전문출장소(법 제11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0호의 업무 및 그에 각각 부대되는 업무만을 취급하는 출장소를 말한다)”를 “여신전문출장소”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법 제10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당 예금등의 해지·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이하 이 항에서 “예금등의 지급액”이라 한다)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예금인출 사유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4제2항 단서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는 유지비용 산정 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구역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 1)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 2) 신규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 3)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계약이전·합병 등에 따라 다른 1) 또는 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만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등”을 “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8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를 “제1호, 제1호의2”로 한다.

1의2.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

제9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호 중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세부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5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9제1항”을 “법 제25조의9”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8호) 중 “기간의 연장 승인”을 “기간의 연장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세부 계획서의 접수·승인·통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제15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승인
10. 법 제12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5.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20. 제12조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5호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3 제5호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심사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공여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별표 4]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의2 관련)

1.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밖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권고·요구·명령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간 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예금자의 권익, 신용질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한 경우
4. 제1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 보호 및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의 한도 완화조치를 폐지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영업기반의 확충을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내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기준 및 영업구역이 수도권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신용공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구역 내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기준 완화(안 제6조의3)

- 1)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하까지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기준 등 인가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 2)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 및 중소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예금인출 관련 보고의무 신설(안 제7조제4항)

- 1) 상호저축은행에 예금등의 해지·인출 등에 따른 순지급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2) 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부당한 예금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관련 규제 완화(안 제8조의2제1호)

지방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등을 위하여 영업구역이 수도권 외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유지비율을 완화함.

라. 우량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완화조치 폐지 및 신용공여의 한도 증액(안 제9조제1항)

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량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완화조치를 폐지하고,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및 차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증액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별도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

**령**

●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중 2. 비위 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위 유형	①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③ 성폭력 비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④ 성매매 비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⑤ 성희롱 비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⑥ 음주운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